

【붙임2】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

1. 신속지원대책

◇ 지원대상 : 경남 통영 및 전북 군산 지역 관련 협력업체* · 근로자(실직자 포함), 통영 및 군산지역 소상공인

* 전북 군산 :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145개사 대상, 해당기업 근로자·실직자

* 경남 통영 : 성동조선 협력업체 250개사 대상, 해당기업 근로자·실직자

◇ 신속지원대책 발표 후

⇒ 중진공, 신·기보 등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, 추후 구조조정 진행상황 감안, 지원대상 지역 추가 확대 검토

가. 협력업체 : 경영안정 지원

① 단기 자금난 완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

① 협력업체의 정책금융 등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1년 유예
(금융위·중기부·행안부)

- 시중은행권 대출은 은행권 협조요청을 통해 만기연장 유도
(금융위·금감원)

<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지원 현황 >

구분	기존 지원대상	추가 지원대상
- 산은, 수은, 기은 대출 - 신·기보 보증	- 경남 통영 조선협력사 - 전북 군산 조선협력사	- 전북 군산 자동차협력사
- 중진공 대출	- 전북 군산 조선협력사	- 경남 통영 조선협력사 - 전북 군산 자동차협력사
- 새마을금고 대출	X	- 경남 통영 조선협력사 - 전북 군산 조선협력사 - 전북 군산 자동차협력사

②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자금 지원*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추진 (기재부·금융위·중기부·금감원)

* 「산경장회의」 결정 사항에 따른 기존 자금지원 연장 및 특례보증 등 신규자금 지원

③ 경영 애로기업에 대해 개별기업 보증한도가 확대된 「특별보증 프로그램」 신설(지원규모 : 신보 1,000억원, 기보 300억원)
(기재부·금융위·중기부)

- * 주요지원사항 : ❶ (대상) 관련기업 협력업체·기자재업체
 ❷ (신규지원) 심사기준 완화·개별기업 보증한도 확대 → 업체당 최대 3억원
 ❸ (우대) 보증비율(80~85%→90%) 및 보증료율 인하(1.2~1.3%→0.9~1.0%) 등

④ 긴급경영안정자금 해당지역 추가배정 및 우대 지원* (중기부)

- * 주요지원사항 : ❶ (처리기간 단축) 20일 → 10일
 ❷ (용자요건 완화) 매출액 10% 감소, 부채비율 제한 등 요건 미적용

< 긴급경영안정자금 배정 및 우대 지원 현황 >

구분	기존 지원대상	추가 지원대상 및 내용
- 긴급경영안정자금 배정	- 통영 20억원, 군산 22억원 배정	- 40억원 규모 이내에서 양 지역에 추가 배분
- 긴급경영안정자금 우대	- 경남 통영 조선협력사 - 전북 군산 조선협력사	- 전북 군산 자동차협력사

② 협력업체 비용부담 완화

① (세금·사회보험료) 세금납부 및 세금·사회보험료 체납처분을 유예하고, 사회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적용
(행안부·복지부·고용부·국세청)

*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사항 → 5대 조선밀집지역 既시행중

- (관세) 1년내 무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, 환급신청 절차개선 (선지급·후심사, 서류면제 등), 관세조사 유예 등 부담 완화 (관세청)

< 세금·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지원 현황 >

구분	기존 지원대상	추가 지원대상
- 세금납부 및 세금·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	- 경남 통영 조선협력사 - 전북 군산 조선협력사	- 전북 군산 자동차협력사
- 사회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적용	- 경남 통영 조선협력사 - 전북 군산 조선협력사	- 전북 군산 자동차협력사
-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, 관세 환급신청 절차개선, 관세조사 유예	X	- 경남 통영 조선협력사 - 전북 군산 조선협력사 - 전북 군산 자동차협력사

- ② (전기요금 경감) 협력업체의 계약전력에 포함된 설비 중 미사용 설비를 제외(봉인 등 시행)하는 방식으로 기본료 경감 (산업부)

< 전기요금 경감 지원 현황 >

구분	기존 지원대상	추가 지원대상
- 전기요금 기본료 경감	- 전북 군산 조선협력사	- 경남 통영 조선협력사 - 전북 군산 자동차협력사

나. 근로자·실직자 : 전직 및 재취업 지원

① 근로자·실직자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(고용부)

- ① 희망센터(경남 조선업 근로자 중점지원) 및 고용복지⁺센터(군산 전담팀 신설)를 통해 찾아가는 재취업 통합서비스와 심리상담 프로그램* 제공

* (평택 와락센터 사례) 자신감과 취업의지 고취 등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 지원

-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등 재직자·퇴직(예정자)자의 전직·재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「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」 서비스 확대(통영·군산)

* 경영진단 전문가, 기업 재난관리자, 노년 플래너 등 신중년 적합직무 발굴 지원

- ② 최장 1년간 '상담·훈련·취업알선'에 이르는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모든 실직자 참여기회 제공 (중위소득 100%요건 폐지)

<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기회 확대 >

확대 내용	기존 지원대상	추가 지원대상
- 소득요건 폐지	- 경남 조선협력사 근로자 - 전북 군산 조선협력사 근로자	- 전북 군산 자동차협력사 근로자

② 직업훈련 지원 확대 (고용부)

- ① 퇴직(실직)자의 원활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참여시 훈련비 자부담 비율 인하(5~80% → 5~50%)

< 훈련비 자부담 인하 >

확대 내용	기존 지원대상	추가 지원대상
- 자부담 비율 인하	- 경남 조선협력사 근로자 - 전북 군산 조선협력사 근로자	- 전북 군산 자동차협력사 근로자

* 내일배움카드 대상 및 훈련비 한도 확대는 2단계 대책시 검토

- ② 지역기업의 인력·직업훈련 수요를 사전 조사하여 지역 내 공동 훈련센터* 직업훈련과정 선제적 확대

* (경남 통영) 폴리텍 진주·창원캠퍼스, 경남대, 인제대 등

* (전북 군산) 대한상의 전북인력개발원, 폴리텍 김제 및 익산캠퍼스 등

③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적극 지원 (고용부)

- 지역 혁신 프로젝트 등 자치단체가 적극 발굴한 지역밀착 일자리 사업 지원을 통해 고용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

* (경남) 구조조정 기업을 위한 인력 잡매칭 بانک 운영(경남 및 9개 상공회의소), 경남 항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(경남 한국폴리텍) 등

* (전북 군산) 고용안정화 기업컨설팅 및 취업연계(군산시, 상공회의소), IoT 융합 개발자 과정 운영 지원 등(전북인력개발원)

다. 소상공인 : 금융지원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력 회복 뒷받침

- ① (정책금융 용자)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통영·군산 지역 특별경영 안정자금을 신규 편성(500억원)하여 우대 지원* (중기부)

* 우대지원사항 : 최대 7천만원, 최저금리 적용('18.1Q 2.94%→2.54%), 5년 상환

② (특례보증 확대) 지역신보 특례보증 확대(400억 → 1,000억원)

⇒ 통영·군산지역 업체별 보증한도 상향 조정(5천 → 7천만원),
보증료율 인하(0.8%→0.5%), 보증비율 100% 지속 적용 (중기부)

③ (자금경색 완화) 통영·군산지역에 대해 정책금융기관, 지역신보, 새마을금고 등 보증·대출 1년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(금융위·중기부·행안부·지자체)

<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현황 >

구분	기존 지원대상	추가 지원대상 및 내용
-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	X	- 통영·군산 소상공인
- 지역신보 보증	- 통영·군산 소상공인	- 추가 1년 만기연장
- 새마을금고 대출	- 통영·군산 소상공인	- 추가 1년 만기연장

라. 지역경제 : 지역경제 신속한 회복 유도

① (공공기관 CSR) 진주·전주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*의 지역업체 상품 구매, 사업 및 금융 지원 등 지역활성화 기여 (기재부·관계부처)

* (진주) 중진공, 세라믹기술원 등 11개, (전주) 국민연금공단, 전기안전공사 등 12개

※ 공공기관 CSR 지원 우수사례(서부발전)

: ①3D프린터 등 공동활용장비 구매, ②동반성장형 저금리 대출 지원(10억원),
③생산성 향상 컨설팅 및 설비 지원(19개사), ④지역기업 R&D 지원 등

② (특별교부세 지원) 지역에서 제시한 주요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특별교부세 배정(총 105억원) (행안부)

③ (공모·총액사업) 지역 미지정 공모·총액사업 우선선정·지원 (각 부처)

* 공모사업 : 생태휴식공간 확대사업(환경부),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(행안부) 등
총액사업 : 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(해수부), 수리시설개보수사업(농림부) 등

2. 지역별 2단계 대책 기본방향

◇ (기본방향) 1단계 발표 후 최대한 조속히 마련

- ① 해당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
- ② 직접대상자 등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

⇒ 필요시 재정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

① 위기지역(업종) 지정을 통한 종합적·체계적 지원 (산업부·고용부)

-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검토
 - * 고용유지지원금,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, 전직·재취업 및 창업 지원 등
-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검토
 - * 경영·고용 안정, 지역산업 구조개선 등을 위한 재정·금융·연구개발 패키지 지원

② 재정지원 등을 통한 재취업·전직 지원 강화 (고용부·산업부·기재부)

-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대 및 훈련비 지원한도 인상을 통해 훈련기회를 확대하고, 훈련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
 - * 발급기간 단축(4주 → 1주), 재직자 발급대상 확대(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포함) 등
- 해외진출 교육, 창업지원 및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센터 설립
-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
 - * 지자체 단위 공공일자리 협동조합 설립, R&D 지원을 통한 제조협동조합 활성화

③ 보완·대체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회복 및 지속성 확보 (관계부처 합동)

- 폐조선소·공장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미래 유망 신산업·서비스 육성, 문화·관광·휴양시설 확대 및 신규 지원
-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 및 사업다각화 촉진
 - * 해외전략지역에 수주(수출)지원센터 확충, 수출상담회 개최, 사업다각화 R&D 중점지원 등
- 재정·금융·세제 등 지자체 기업 유치에 대한 종합지원 방안 검토
 - *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우대지원 지역특구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준의 세제지원(조특법 개정) 등

④ 지자체의 지역 회복계획 수립시 적극 지원 검토 (관계부처 합동)

- * 지자체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시 정부지원 요구사항도 포함

⇒ 동 과제들을 포함, 추가 발굴한 과제들을 적극 검토

3. 중장기 제도개선

① 산업·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 정비

- 지정단계 세분화 및 향후 대응 프로세스 정립 등 제도정비 검토

< 대응 프로세스(예시) >

- ① 위기지역의 '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' 및 '고용위기지역' 신청 →
- ② 산경장회의(실무협의체)을 통한 긴급대책 추진 심의(1~2주 이내) →
- ③ 위기지역 지정시 '지역대책(긴급대책+지역특화대책)' 마련(2개월 이내)

② 법·제도 정비 및 재원조달방안 검토 (산업부·고용부·기재부)

- (법·제도 정비) 위기 모니터링 체계 도입, 대응 프로세스, 주요 지원사항, 범부처 지역산업위기대응단 구성 등 근거 마련

* 「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」 및 「고용위기지역」 제도(현재 각각 고시에 규정) 단일 법제화 검토

- (재원조달) 산업위기 발생시 각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적기지원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재원 확보방안 검토